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7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1년 9월 26일
발의자 : 김연선의원 외 13명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이유로 자연경관지구 안에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**숙박시설의**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.
- 자연경관지구는 ‘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구’로, 전용주거지역 혹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.
- 따라서,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주거권 침해 우려가 높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후손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우리 자연경관 보호와 주거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 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자연경관지구내에 「관광진흥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도록 개정함(안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삭제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8호 규정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규정에 따른다.

신 ·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~7. (생략)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. <u>다만,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9.~18. (생략)</p> <p>②~⑦ (생략)</p>	<p>제39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. <u>(이하 단서 삭제)</u></p> <p>9.~1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⑦ (현행과 같음)</p>